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66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김위상

김성원 • 이헌승 • 최수진

송석준 · 김석기 · 최보윤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후단).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중 ""200인 미만"은 "15인 미만"으로"를 ""100인 미만" 은 "10인 미만"으로"로 한다.

제113조 후단 중 ""200인 미만""을 ""100인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 제108조(준용규정) |
|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 | |
| 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 |
|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 | |
| 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 | |
|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 | |
| 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 | |
| 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 | |
| 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 |
|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 | |
| 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 | |
|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 |
| 우 제16조제1항 중 "조합원 자 | |
| 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 |
|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20인 | |
| 이상"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 |
| 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 | |
| 호"는 "제107조제1항제3호 및 | |
|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 | |
|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 |
| 제47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 | |
|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 |
| 제15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 | |
| 호·제4호"는 "제107조제1항제6 | |

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 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 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 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 은 항 제2호"는 "제107조제1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 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 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 제8호"는 "제107조제1항제6호" 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 호 및 제8호"는 "제107조제1항 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07조제1항 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07 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07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u>"200인 미만"</u> 은 "15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 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 합등기부"로 본다.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 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 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 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 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 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 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1항 중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0인 이상"은 "수산물가공 업을 경영하는 사람 7인 이상" 으로, 제47조제3항제1호 중 "제 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

| | "100인 | 미만" |
|-------------|--------------|-----|
| 은 "10인 미만" | ㅇ로 | |
| | , | |
| | | |
| | | |
| | | |
| 제113조(준용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 조제3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제4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3호 및 법 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 7조제4항제1호 중 "제60조제1 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제2 호"로, 제47조제4항제2호 중 "제60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 까지 및 제15호의 사업 중 같 은 항 제2호"는 "제112조제1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로, 제60조제3항 중 "제1항제3 호"는 "법률 제4820호 수산업 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 5조"로, 제60조제4항 중 "제1항 제8호"는 "제112조제1항제6호" 로, 제60조제5항 중 "제1항제7 호 및 제8호"는 "제112조제1항 제6호"로, 제60조제8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2조제1항

제2호"로,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는 "제112
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제84조제4호 중 <u>"200인 미만"</u>
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
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 조합등기부"로 본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1) | 11 11 |
| "100인 | 미만" |
| "100인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미만" |
| <u>"100인</u> | <u>미만"</u> |